토 론 문

- '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경쟁법적 접근' 중심으로 -

SK텔레콤 CR전략실장 이상헌

□ 망중립성 논의 경과

-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세계 주요국에서 망중립성 이슈에 대해 정책당국은 물론 CPND를 아우르는 산업계內 모든 참여자들이 치열한 논쟁을 거쳐 유
 - 이 과정에서 망중립성 개념은 인터넷의 자유로운 이용권 보장에서 망의 안정성 및 합리적 이용을 위한 ISP의 트래픽 관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
 - ※ 소수 이용자(Heavy user)의 통신망 자원 독점으로부터 다수 이용자의 이용권 보장 및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한 생태계 구축도 망중립성 논의의 핵심사항
- 해외 주요국의 경우, 자국 ICT 산업의 강점 및 산업발전 전략에 따라 다양한 정책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, 법제화를 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임
 - (미국) 오바마정부 출범 이후 적극적으로 망중립성 법제화를 하였으나, 관련 시장 및 사업자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기본적인 원칙만을 정함
 - ※ 그간 망중립성 정책을 선도해 온 미국은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망중립성 규제 완화로 정책 기조 변화가 예상됨
 - (EU) 기본적으로 법제화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으나, EU 권역內 단일규제 필요성 차원에서 최근 망중립성을 법제화하였으며, 미국과 같이 원칙만 규정하는 형식을 취함
 - (영국, 일본) 통신사업자들이 시장자율적(Self-Regulation)으로 망중립성 행동원칙 등을 만들어 이를 준수하는 형태로, 정부 주도의 별도 제도화는 추진되지 않았음

- ※ (영국) ISP사업자 협의체인 BSG(Broadband Stakeholder Group)는 2012년 7월 'Open Internet Code of Practice'를 발표하고 ISP사업자들이 Open Internet Code of Practice 규약에 서명
 - (일본) ISP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'08년 '대역제어 운영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'을 마련한 이후, 총무성은 현재까지 시장에서 문제가 없는 만큼 법제화는 필요없다는 입장
- 국내에서도 법제화보다는 정부 주관하에 4년('11년~'14년)에 걸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(정부, 사업자, 학계, 소비자단체, 연구기관)의 협의를 통해, '망중립성 가이드라인', '합리적 트래픽 관리 기준' 형식으로 입장을 정리
 - 급변하는 글로벌 ICT 환경에서 신기술 및 혁신적 서비스 출현 등에 유연한 대처를 위해서는 법제화보다는 가이드라인 및 기준 형태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의 결과에 따른 것임
 - 同 가이드라인·기준이 비록 법령은 아니지만 ICT 생태계內 참여 사업자들이 함께 만든 것으로, 각자의 책임 하에 준수하고 있으며, 최근까지 망중립성과 관련한 사업자간 분쟁이나 논란은 없는 상황

□ 제로레이팅 관련

- 제로레이팅은 과거부터 일반적으로 존재해왔던 사업자간 제휴상품이나 요금 할인상품으로 볼 수도 있으나, 최근 망중립성의 관점과 연계하여 새롭게 논의/연구가 시작되고 있는 상황
 - 제로레이팅과 관련하여 차별이나 형평성 이슈가 있을 수 있으나, 이용자 측면에서 서비스 이용부담 경감, 산업 측면에서 새로운 서비스/콘텐츠 이용 활성화 등의 장점이 존재
- 대부분의 해외 주요국에서도 제로레이팅을 허용하고 있으며, 성급한 규제 도입이나 정책방향 결정보다는, Wait & See Stance를 가지고 있음
 - 미국의 경우, 제로레이팅에 대해 간단한 원칙만을 제시하고, 문제가 될 경우 Case-by-Case로 판단하겠다는 입장

- EU의 경우, 제로레이팅을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한 ISP-최종 이용자간 상업적 거래로 보아 허용하는 입장이며, 문제가 되는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회원국 규제기관에서 판단하도록 위임
- 이미 개방되어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규제 도입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규제 및 시장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
- 이와 같이, 제로레이팅에 대해서는 사전적 규제를 위한 세부 Rule-setting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며, 사후적인 규제가 필요하더라도 신중한 접근이 요구
 - 사후규제의 경우에도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부담 경감, 제휴를 통한 새로운 서비스 개발/확산, 양면시장의 순기능 활성화 등 제로레이팅이 갖는 장점과 특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규제방법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
- 아울러,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핵심기반이 되는
 ICT 산업 및 Biz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규제를 도입할 것인지
 여부는 국가발전 전략 측면도 충분히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
 - 이러한 점에서 발제문에서 제로레이팅을 사전적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사후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자는 의견은 타당하다고 생각함